

#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이종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4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9. 12.

발의자 : 이종명 · 김성찬 · 황영철  
박명재 · 김승희 · 신보라  
유민봉 · 이완영 · 김규환  
심재철 · 추경호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일정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상 등으로 인하여 입원 등 연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역 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에 따라 의료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재해부상군경의 경우 전역 전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2조제1항제2호, 제8조).

##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”을 “입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및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3항 각 호”를 각각 “제4항 각 호”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(「병역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)이 전역 예정일(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) 전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한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항제2

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이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에 관한 관한 적용례)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이등급(이하 “상이등급”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 3. · 4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 제8조(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) ① (생 략)</p>	<p>----- ----- 3. · 4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8조(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(「병역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)이 전역 예정일(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) 전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.</u></p>
<p><u>② · ③ (생 략)</u>  <u>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·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</u></p>	<p><u>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</u>  <u>⑤ ----- 제4항 각 호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<p><u>⑤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⑥ -----</u>  <u>-----제4항</u>  <u>각 호-----</u>  <u>-----</u>  <u>-----</u>  <u>-----.</u></p>
--	--